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 및 입찰참가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고시 제1995-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 및 입찰참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5년 2월 18일
노동부장관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 및 입찰참가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건설재해의 효율적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시행령 및 규칙, 산업재해

보상보험법령, 건설관계법령 및 예산회계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

제3조(재해율 조사) ①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사업주 기타 관계인은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율 조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 출석답변 등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업체의 재해자수 계산) ①건설업체의 재해자수는 재해율을 조사하는 당해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재해자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도급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도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에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부 록 1-2

③자기공사(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때)를 시공한 건설업체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재해율은 당해 업체의 재해자수에 그의 도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④예산회계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서명(또는 날인)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본다.

제5조(상시근로자수의 계산) ①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에 필요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상시근로자수} = \frac{\text{연간 국내순수건설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평균임단가} \times 300}$$

②제1항 중 노무비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건설(갑)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제6조(재해율의 계산) ①건설업체의 재해율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재해율} = \frac{\text{재해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

②제1항의 재해율 계산방법 중 재해자수의 경우 사망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재해율(이하 “환산재해율”이라 한다)을 계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는 사망재해자 1인당 산재보험금 지급액(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평균과 부상재해자 1인당 산재보험금 지급액(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평균의 비율로 가중하여 적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부여한다.

④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율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당

해 건설업체의 사망재해 만인율로 재해율을 갈음한다. 이 경우 사망재해 만인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text{사망재해 만인율} = \frac{\text{사망재해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제7조(사망사고의 가중치부여 적용제외) 사망재해자의 경우 당해 사망사고의 원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함이 없이 재해율을 계산할 수 있다.

1. 전염병·식중독·고혈압 등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및 교통사고
2.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사고
3. 방화 등에 의한 사고
4.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5.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6. 기타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고

제8조(무과실사고의 심사) ①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사망사고 원인의 해당 여부를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건설안전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
2.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3. 건설안전기술사 등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

부 록 1-2

청하거나,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 등을 요청 받은 사업주 또는 관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찰참가 제한 등

제9조(입찰참가 제한 등 협조의 요청) ①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가 규칙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체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고, 그외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의 요청은 도급인인 건설업체 또는 그의 수급인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협조의 요청대상 보고) 지방노동관서장은 제9조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 1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에 필요한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체(상호)명,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주소
2.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4. 사건송치서 사본, 범죄사실, 적용법조
5. 건설업 면허증 또는 사업허가증 사본(영업정지 요청에 한함)
6.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의 요청시 필요한 서류

제11조(제재기간의 가중 또는 경감) ①노동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규칙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규칙 별표 19의 기준 또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6의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이 건설업 전국 평균 환산재해율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설업체의 법령위반사항이 극히 경미하거나, 당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규칙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규칙 별표 19의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6의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가중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업체가 최근 2년간 규칙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당해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이 건설업 전국 평균 환산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③규칙 제136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 중 “동시에”에 대하여는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기준재해) 규칙 제13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해”라 함은 당해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이 건설업전국평균 환산재해율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건설업 전국평균사망재해만인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